교양교육품질관리규정 5-1-28

규정번호 5-1-28
제정일자 2016.3.1
최근개정 2024.7.24
개정차수 4차 개정
관리부서 교육과정혁신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목표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양교육의 품질을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양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 항목) ① “교육환경”은 우리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강의실, 실험실습실, 기자재 및 도구 등 유형의 자산으로 학생들의 교양교육을 위해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은 우리대학에서 교양교육을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과정 개발 내용, 교육과정 운영 내용 등으로 학생들의 교양교육을 위해 적정하게 개발되어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성과”는 우리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교양 교육의 결과를 측정하는 내용으로 NCS 직업기초능력 성취도 수준, 교양 강의평가 결과, 대학 만족도 조사의 교양 부문 결과 등을 관리하여 교양교육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절차) 교양 교육과정의 품질관리는 교양 교육과정 운영 의견수렴, 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분석자료 수집, 관련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 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 개최, 교양 교육운영에 반영 등의 절차로 진행한다.(개정 2022.12.12.,2024.7.24)

제4조(주관부서) 교양교육 품질관리는 교육과정혁신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08.27.,2022.08.08.,2024.7.24)

제5조(운영 및 환류) ① 효율적인 교양 교육과정 품질관리를 위하여 교무처에서는 제2조의 품질관리 항목을 평가·조사하여 매년 교양교육 품질관리 보고서를 발간한다.(개정 2018.08.27)

② 교양교육 품질관리 보고서에서는 교양 교육품질 지수를 산정하며 이에 대한 상세한 산정방법은 교무처장이 정하도록 한다.(개정 2018.08.27.,2022.08.08.,2024.7.24)

③ 교양교육 품질관리 보고서는 차년도 교양 교육운영계획에 반영한다.

④ 교양교육 품질관리의 결과는 우리대학 교육품질관리 주관부서에 전달하여 교육의 품질관리 개선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5조제2항)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